

## 교육과정위원회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 제22조에 의하여 교육과정(교양, 전공)의 구성과 운영의 합리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교양 및 전공의 영역별 학문 연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5.1.13.><개정 2018.9.10>

**제2조(구성)** ① 위원회의 위원은 각 계열별 또는 전공영역별로 위원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교학지원처장으로 한다.

③ 위원회에는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<개정 2007.09.01.><개정 2015.1.13.><개정 2018.9.10>

**제3조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**제4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과정 편성 방침에 관한 사항<개정 2007.09.01>
2. 교육과정 개편 및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<개정 2007.09.01.>
3. 수업평가 개선 및 심의에 관한 사항<개정 2015.1.13>
4. 교양(강좌, 독서)개설,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
5. 부전공 및 복수전공의 운영에 관한 사항
6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5조(소집과 의결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6조(회의록)**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업무)** 위원회에 관한 업무는 교학지원처에서 관장한다.

**제8조(간사)**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교무지원팀장이 된다.

**제9조(시행)**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(2001. 1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10. 6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9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2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1. 1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9. 10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